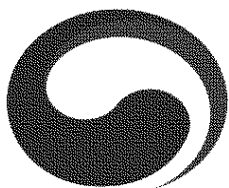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6. 6.



농림축산식품부

I

개정사유

- 가축질병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 가축전염병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위험 분석의 실시 등 필요한 국경검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완코자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을 개정

II

주요 개정내용

① 역학조사 시 구체적인 금지행위 규정(안 제13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원활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거짓진술 등 역학조사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②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대상 확대 등(안 제16조)

-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 파악 및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가축 및 ‘가축의 알’에 대해서도 이동기록을 작성·보존토록 법적 근거조항 마련

* 작성·보존대상 확대 : (현행) 가축, 식용란 → 가축, 가축의 알

③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 확대 등(안 제29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기관을 확대(시·도, 시·군·구 → 농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시·군·구)하고, 위촉대상 범위를 농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안 제32조)

- 수출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입금지지역 해제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
- 국제기준 및 수출국 제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위험분석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 마련

⑤ 수입금지 물건의 제3국 반출 허용(안 제33조)

- 수입금지된 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수출국으로의 반송 외에 제3국으로의 반출도 허용

⑥ 탁송품의 검역(안 제39조)

- 해외직구 등 최근의 소비 형태 변화를 감안하여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물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⑦ 검역시행장의 업무 정지(안 제42조)

-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그 사유에 따라 지정 취소 이외에 일정기간 업무 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함

⑧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대한 지시 권한 부여(안 제52조 및 제53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 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

㉑ 가축 등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 작성·보존 업무의 위탁(안 제55조)

- 가축, 식용란 및 종란의 이동기록 작성·보존 관련 정보를 국가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축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

참고자료**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의 식용란 및 「축산법」 제2조제5호의 종축업에 따라 생산되는 부화용 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화장의 소유자

제16조제3항 중 “소유자등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를 “소유자등,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식용란”을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식용란 또는 종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로, “예찰을”을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감시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를 “대상, 절차”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제1항제1호”를 “수출국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송”을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위생조건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으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를 “다만,”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우편물로서의 수입)”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으로 하고, 제39조제1항 본문 중 “우편물로”를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로, “우편물”을 각각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체국장은”을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으로, “우편물의”를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직원이”를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을 취소할”을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지시)”로 하고, 제52조제1항 중“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4항 중“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를“(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로 하고, 제53조 중“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를“시·”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조정 에”를“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축, 식용란 및 종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 작성
· 보존 관련 정보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조정

제5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60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검역대상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에 통
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생 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12조의2(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3조(역학조사) ①·② (생 략)</p> <p style="margin-left: 20px;">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u>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0px;">④ (생 략)</p>	<p>제13조(역학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u> ----- -----.</p> <p>1. <u>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u></p> <p>2. <u>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u></p> <p>3. <u>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p>	<p>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 -----</p>

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할 때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

----- 가축의 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의 식용란 및 「축산법」 제2조제5호의 종축업에 따라 생산되는 부화용 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2. (현행과 같음)

3. 부화장의 소유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유자등,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

④ -----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식용란 또는 종란-----

⑤·⑥ (현행과 같음)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수입금지) ① ~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

· 감시 등을

②

대상, 절차

제32조(수입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출국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 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 변경

<신 설>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⑥ (생략)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

-----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위생조건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② ----- 제1항
제1호 ----- 내용, 위
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
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
물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
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
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
을 할 수 있다.

제42조(검역시행장) ① ~ ⑥ (생
략)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송업자"라 한다)는 --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
-----.

③ -----
----- 우편
물 또는 탁송품-----
-----.

④ -----
우편물 또는 탁송품-----
-----.
----- 우편물 또는 탁송품-----
-----.

-----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
-----.

제42조(검역시행장)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

----- 검역시
행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
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할 --.
-----.

1. 2. (현행과 같음)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
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신 설>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

.....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

④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

제53조(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시·-----

-----.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조정에 관한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 4.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신 설>

----- 각
호에 -----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축, 식용란 및 종란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 작성·보존 관련 정보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조정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p>9. ~ 12. (생 략) ③ (생 략)</p>	<p><u>동물검역대상 탁송품을 동물 검역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u> 9.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	---